

2019년도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8. 30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- 심의위원 : 전용준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임진모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2건(안건번호 제2019-104584호~104683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음악에 관한 것입니다. 그 중에는 예컨대 음악 안녕(가수 폴킴), 음악 기억해 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(가수 거미), 음악 내 목소리 들리니(가수 벤), 음악 헤어져줘서 고마워(가수 벤), 음악 그대라는 시(가수 태연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B 위원 : 본건 심의대상물은 음악저작물 등의 불법복제물로서,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도 없기 때문에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
- C 위원 : 104584호에서 104683호까지 100건의 경우 태연의 <그대라는 시>, 헤이즈의 <내 맘을 볼 수 있나요> 등 최신 가요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

2019년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8. 30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